

< 어렵고 복잡한 자동차 원산지판정 이제 하루면 OK! >

- 실시간(Real-time)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수출중단 위기 극복사례 -

요약 (FTA 활용)

□ 기업소개

○ SUV 등 RV차량 전문 생산업체 S社

- 1997년 IMF사태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심각한 경영난으로 모(母)그룹 해체, 법정관리 및 노조파업, 합병, 해외 매각 등을 반복해오다 최근 신차 출시 및 판매 호조로 경영 정상화 노력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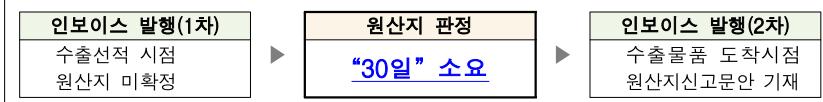
□ FTA 활용(장애요인)

○ 체약상대국(EU)의 반복적인 원산지검증 요청

- (사유) 아일랜드 수입자측에서 한-EU FTA '원산지신고 문안이 기재되지 않은' 상업서류(INVOICE)*를 근거로 협정세율 적용신청

* 원산지판정에 장시간(30일)이 소요되어 수출선적시점에는非특혜C(O1차)가 발행되었다가 도착 시점(1개월 경과 후)에 특혜C(O2차)가 발행되는 S社의 현행 원산지관리시스템 한계에 기인

< S社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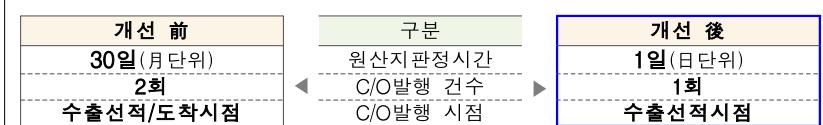


□ FTA 활용(극복과정)

○ 실시간(Real-time)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 ① 원산지판정 소요시간 단축(30일→1일), ② 원산지증명서 발급횟수 축소 (2회→1회), ③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시뮬레이션 기능 탑재

< 원산지관리시스템 개선 전·후 비교 >



□ FTA 활용 효과

○ 원산지검증으로 인한 수출계약 취소 위기를 시스템 개선을 통해 극복 ⇒ EU 수출금액 기준 연간 약 2,500억 원 수출물량 지속 확보

○ 원산지검증 통과에 따른 기업 및 제품 신뢰도 제고로 수출경쟁력 확보 ⇒ 對 EU 평균 수출증가율(131%) 반영시 연간 약 3,300억 원 규모 매출성장 기대

○ 원산지검증 미통과시 부과될 관세비용 절감 ⇒ EU 관세율(10%) 고려시 5년 누계기준 약 750억 원 추징부담 해소

[분야 : FTA 활용 우수]

어렵고 복잡한 자동차 원산지판정, 이제 하루면 OK!

- 실시간(Real-time)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수출중단 위기 극복사례 -

1 기업소개

□ SUV 등 RV 전문 생산업체 S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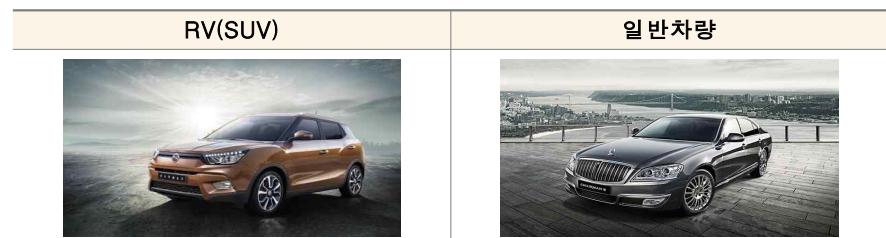
○ S社는 SUV, 지프로 대표되는 RV(Recreational Vehicle) 차량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완성차업체 중견기업

- 한국전쟁 직후인 1954년 버스를 생산하는 ○○○자동차제작소로 시작하였고, 1986년 ○○그룹에 인수되면서 국내 대표 SUV, 지프 전문 브랜드로 성장하였으나,

- 1997년 IMF사태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심각한 경영난으로 모(母)그룹 해체, 법정관리 및 노조파업, 타사로의 합병, 해외 매각 등을 반복해왔으며,

- 2010년 인도 자동차업체인 마힌드라&마힌드라에 인수되면서 소형 SUV를 중심으로 신차 모델을 꾸준히 출시하는 등 그간의 부진을 딛고 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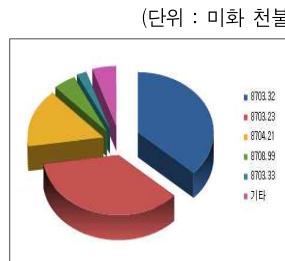
□ 주요 생산물품



□ 최근 5년간 수출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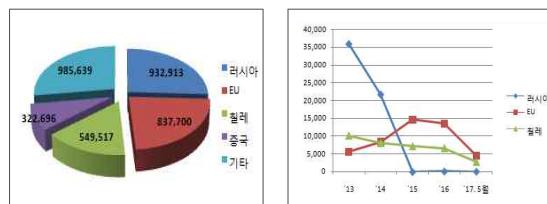
- (품목별) 완성차 제조업체의 특성상 전체 수출금액의 90% 이상은 자동차(일반, RV 등)이며, 차량용 부품과 부속품이 약 4.7% 차지

HS	품목	수출금액
8703.32	실린더용량 1,500cc 초과 2,500cc 이하	1,340,900
8703.23	실린더용량 1,500cc 초과 3,000cc 이하	1,293,325
8704.21	총중량이 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565,544
8708.99	차량 부품과 부속품	170,452
8703.33	실린더용량 2,500cc 초과하는 것	73,392
기타		184,851
합계		3,628,464



- (국가별) FTA 미체결 국가인 러시아 수출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2015년 이후부터는 EU가 최대 수출시장으로 부상

국가	수출금액	비중
러시아	932,913	26%
EU	837,700	23%
칠레	549,517	15%
중국	322,696	9%
기타	985,639	27%
합계	3,628,465	100%



- (FTA 체약 국가별) EU 회원국으로의 수출이 FTA 체약국 수출의 거의 절반(46%)을 차지

협정명	'12	'13	'14	'15	'16	'17. 5월	합계
EU	83,983	114,685	171,738	245,273	228,523	78,241	844,202
아일랜드	943	1,793	3,220	4,736	3,350	1,255	14,042
칠레	130,990	158,123	129,973	110,976	104,862	45,581	634,924
인도	29,247	51,932	14,388	6,506	1,642	1,482	103,715
터키	29,439	19,334	16,734	17,921	11,655	1,623	95,083
아세안	12,740	12,989	8,117	5,343	22,357	1,515	61,546
기타	16,689	9,188	15,726	21,156	62,131	11,293	124,890

2 FTA 활용과정

FTA 활용 시 장애요인

최대 수출시장인 EU 회원국(아일랜드) 관세당국의 **반복적인 원산지검증 요청**
⇒ FTA 특혜 적용에 빨간불!!! FTA 체약국으로의 자동차 수출 중단 위기

- S社가 수출한 자동차에 대하여 EU(아일랜드) 관세당국은 원산지증명서(C/O)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원산지검증 연이어(2회) 요청

- 원산지검증 결과 원산지증명서(C/O)가 적정하지 않거나 원산지결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단순히 아일랜드뿐만 아니라 EU 회원국 전체로 검증이 확대될 개연성이 높은 상황

- 최근 러시아 수출 급감이라는 악재 속에서 EU로의 수출까지 타격을 입게 될 경우 S社는 또다시 쇠약의 위기상황에 직면할 우려

* S社의 EU 자동차 수출액은 2,500억원 이상으로 전체 수출액의 약 23%를 차지

⇒ 평택세관은 아일랜드 수입자측의 단순실수로 부적정한 원산지증명서(C/O)가 제출된 것을 확인하고, 원산지증명서는 적법하게 발행되었고 해당 수출물품은 한국산(역내산)이라는 검증결과를 회신하는 한편, 원산지검증 요청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원인에 대한 분석도 병행

구분	검증요청 사유	검증결과 및 회신
1차 ('16.8)	[아일랜드 수입자] 한-EU FTA 원산지신고서 문안이 기재되지 않은 상업서류(INVOICE) 제출 →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신청	[수출자=S社] 원산지신고서 문구가 정상적으로 기재된 상업서류가 1개월 후 추가로 발행된 사실을 확인 [세관] FTA협정상 적법한 원산지증명서 발행사실 및 한국산임을 회신
2차 ('16.12)	[아일랜드 수입자] 한-EU FTA 원산지증명서가 아닌 상공회의소 발행 특혜원산지증명서 제출 →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신청	[상공회의소] 당해 원산지증명서가 진본임을 확인(공문 회신) [세관] 원산지증명서는 권한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진본이며, 해당 제품은 한국산임을 회신

FTA 활용(장애극복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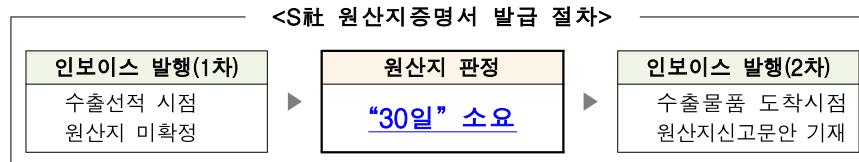
(1단계) 문제인식 반복되는 원산지검증 요청 원인분석

- (실시간<Real-time> 원산지관리시스템 부재) S社는 제품(완성차)의 원가계산 및 원산지판정을 月(30일) 단위로 정산하는 노후화된 방식의 원산지관리시스템 운영

- (1차 INVOICE 발행) 따라서 최초 수출선적 시점에는 제품의 원산지판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원산지신고 문안*이 기재되지 않은 상업서류(INVOICE)가 발행되어 체약상대국 수입자에게 송부

* 한-EU FTA의 경우 별도의 원산지증명서(C/O) 서식을 두지 않고, 수출자가 발행한 상업서류상에 약정된 원산지신고 문안을 기재하는 것으로 원산지증명에 갈음함

- (2차 INVOICE 발행) 1차 INVOICE 발행일로부터 1개월(30일) 경과 후 최종 원산지판정(확정)과 함께 원산지신고 문안이 기재된 상업 서류(INVOICE)가 추가로 발행되어 체약상대국 수입자에게 송부



⇒ 이 과정에서 EU(아일랜드) 수입자의 착오로 수출선적 시점에 발행된 원산지신고 문안이 없는 '1차 INVOICE'를 근거로 한-EU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한 것이 당해 원산지검증 요청의 가장 결정적 원인

- (협정별 다양한 원산지결정기준) 자동차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아래와 같이 협정별로 상이하며, 1~2만개의 부품을 사용하는 완성차의 특성상 원산지판정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

HS	협정	원산지 결정기준	장애요인
8703.10 ~8703.90	EU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MC45)	협정별 상이한 원산지결정기준 복잡한 원산지 판정 과정
	칠레	공제법 45% 또는 직접법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BD45 or BU30)	
	인도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CTH & RVC40)	

- (원산지관리 전담조직 및 인력 부족) 법정관리, 대량 해고 등에 따른 긴축경영으로 원산지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없이 세무(Tax) 담당부서에서 원산지관리 업무를 겸하고 있어 체계적인 원산지관리와 전문성 부족

(2단계) 문제해결 민관 협업을 통한 다양한 개선 노력 전개

- (연구동호회 구성) 관내 특화산업인 자동차 및 부품 제조·수출기업의 FTA 활용 및 원산지검증 대응역량 향상을 위해 민·관합동 연구동호회 (CoP)인 “평택세관 FTA 서포터즈” 신설
- 세관, 상의(商議), 수출입기업(S社 외) FTA 담당자(총 12명)으로 구성하고, 자동차산업분야 FTA 활용 및 수출검증 대응방안 중점 연구

- (원산지검증 대비 설명회 개최) S社에 대한 아일랜드 관세당국의 원산지 검증을 계기로 EU 전체로의 검증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 상의(商議)와 협동으로 자동차 수출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 관내 대표적 완성차업체인 S社는 물론 부품을 제조·납품하는 협력업체 대부분(40개社)이 참석하는 등 최근 검증 이슈에 관심 집중



- (실무자 협의회 구성·운영) 세관, 상의(商議), 수출입기업(S社 및 협력업체 5개社) 원산지관리 실무자 협의회를 구성하고, EU(아일랜드)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 요청 건에 대한 실질적 대응전략 협의
- 당해 원산지검증의 원인이 원산지판정 소요시간(30일)이라는 인식을 같이하고, ‘실시간(Real-time)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결정



- (FTA 기동대 활동과 연계) 상반기 평택세관 FTA 기동대 활동 우선순위를 자동차 및 부품 제조업체 위주로 편성
- 원산지증명서 및 확인서 발급·관리방안 등 원산지검증 강화 추세를 반영한 ‘1:1 맞춤 컨설팅’ 제공

(3단계)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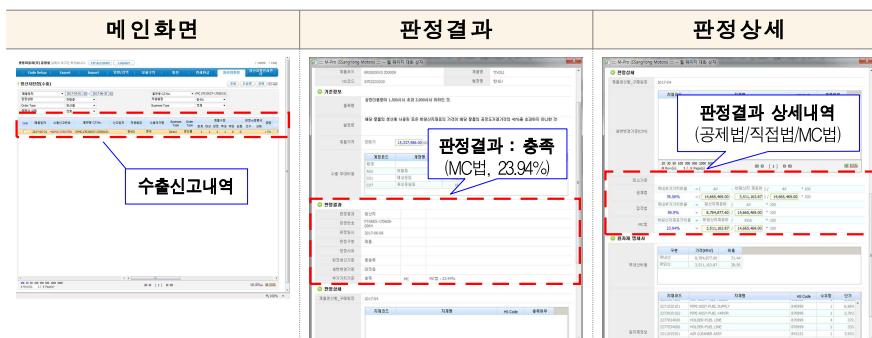
실시간(Real-time)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 (추진 방향) 원산지판정 및 원산지증명서 발행 소요시간 획기적 단축
- (진행 경과) 시스템 개발('17.1월~3월)→시험운영('17.4월)→실제운용('17.5월~)
- (추진 결과) 실시간(Real-time)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실현
 - 원산지판정 소요시간 : 30일 → 1일
 - 원산지증명서 발급 : 2회 → 1회
 - * [종전] 수출선적시점(非특혜C/O) → 도착시점(특혜C/O), [현재] 수출선적시점(특혜C/O)
 -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별 요건 충족 여부 사전 시뮬레이션 기능 탑재

〈 원산지관리시스템 개선 전 · 후 비교 〉		
개선 前	구분	개선 後
30일(月단위) 2회 수출선적/도착시점	원산지판정시간 C/O발행 건수 C/O발행 시점	1일(日단위) 1회 수출선적시점

- (세관역할) 실시간(Real-time)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의 효과와 필요성 제기, 자동차 관련 수출검증 사례 및 착안사항 공유, 판정결과 정확성 여부 점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과의 호환성 지원(본청 정보관리과 업무협의), 사전 시뮬레이션 기능 정밀도 점검 등 시스템 개발단계에서부터 판정결과 사후점검까지 전영역에 걸쳐 해당 업체와 정보를 공유하고 전폭적 지원 제공

〈 실시간 원산지관리시스템 화면 캡처 〉



3 FTA 활용 효과

□ 원산지검증을 수출확대 및 품질인증의 기회로 활용하다~!

- (수출증단 위기 극복) 원산지관리시스템 미비로 인한 반복적인 원산지 검증으로 자칫 체약상대국 수입자와의 수출계약이 취소될 위기에 봉착 하였으나, 세관의 컨설팅 및 실시간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극복

⇒ EU 수출금액 기준 **연간 약 2,500억원** 상당 수출물량 지속 확보

- (수출경쟁력 제고) 실시간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및 EU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 통과에 따른 기업 및 제품 신뢰도 제고로 수출경쟁력 확보

⇒ 최근 5년간 对 EU 평균 수출증가율(131%) 반영시 **연간 약 3,300억원** 규모 매출성장 기대

- (관세 절감) 금번 EU(아일랜드)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 미통과시 부과될 관세비용 절감

⇒ EU 관세율(10%) 고려시 5년 누계기준 **약 750억원** 상당 추징 부담 해소

4 FTA 활용 특징 및 시사점

□ 본 건은 한-EU FTA 발효 이후 5년의 기간이 경과하면서 수출검증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우리나라 핵심 수출품목 중 하나인 완성차에 대한 체약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이 어떠한 절차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미리 파악해 볼 수 있었던 사례로 판단되며,

□ 향후 절차 확대되고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FTA 원산지검증이라는 난제를 세관과 기업의 협업(協業)을 통해 해쳐 나갈 수 있고, 오히려 원산지검증을 해당 기업과 제품의 신뢰도와 경쟁력을 제고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 준 FTA 활용 모델임

분야	업체명/세관명	제목	담당자(업체/세관or관세사)	연락처(전화/이메일)
FTA 활용 우수	쌍용자동차㈜ 평택	어렵고 복잡한 자동차 원산지판정, 이제 하루면 OK!	업체: 노강호 차장 세관: 통관지원과 관세사: 우리회계법인 김동령	031-610-1299/ kangho.roh@smotor.com